

보건소 규정

제정 1994. 8. 8.

제4차 개정 2025. 10.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건소는 본 대학교 또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및 상지푸른의원에 둔다. (개정 2002.7.31. 2016.11.30)

제3조(사업) 보건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
2. 환경위생 관리 및 질병의 예방.
3. 응급환자의 처리
4. 건강상담
5. 기타 건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소지한 자를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2.7.31. 2016.11.30)

② 소장은 이 보건소를 대표하며 보건소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간호사) ① 보건소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7.31., 2025.10.21.)

② 진료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응급처치
2. 소장의 지시에 따르는 진료행위
3.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상담
4. **보건소 내원환자 통계 작성 및 관리를 한다. (신설 2025.10.21.)**

제6조(사무직원) 보건소에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개방시간) 보건소의 개방시간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조 정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개정 2002.7.31)

제8조(투약 및 진료) ① 약품은 1회분 또는 1일분에 한하여 투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료실적 통계, 약품 수불대장, 약품 청구대장, 업무일지 등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보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신설 2025.10.2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소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21.)

제11조(재정) 보건소의 재정은 본교의 교비지원금 및 학생의료공제회비로 충당한다. (개정 2002.7.31.)

(조 변경 2025.10.21.)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24, 2016.11.30)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439, 2025.10.21.)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